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IMIN (4646)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mailto:imin@iminusa.net)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and Beckman)  
Tel: (949) 551-IMIN (4646)  
Website: [www.iminusa.net](http://www.iminusa.net)

## Newsletter February 2020

### <공적부조 최종규정 (Public Charge Final Rule)이 무엇인가요? >

그동안 시행이 중지되어 왔던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대해 2020년 1월 27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적부조 최종규정 (Public Charge Final Rule)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혜택 프로그램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할 때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자이시더라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부조 최종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나이, 건강, 소득, 교육 및 능력, 자본능력 등 신청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36개월 이내에 공적부조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을 경우 비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일 1개월동안 3개의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최종규정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받은 신청자는 이민국의 승인하에 \$8,100.00 부터 시작하는 채권 (Public Charge Bond)를 구입하시면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의 재정능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신청자들에게만 영주권 그리고 비이민 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을 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적부조 최종규정 (Public Charge Final Rule)은 언제 시행되나요? >

최종규정은 일리노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이민국에 접수하는 신분변경, 신분연장 신청자들은 새로운 이민국 문서를 사용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시에는 추가 서류도 동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이미 접수되거나 2월 24일 이전에 소인(Postmark)이 찍힌 청원서(Petition)나 지원서(Application)에 관해서는 최종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적부조 최종규정 (Public Charge Final Rule)에는 어떤 혜택이 해당되나요? >

1. 연방정부 생활보조금 (SSI), 빈곤층 현금지원 (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 (General Assistant)  
\*캘리포니아주의 빈곤층 현금지원 (TANF)의 이름은 CalWORKs입니다.

**2. Food Stamp (SNAP)**

\*캘리포니아주의 푸드 스탬프 (SNAP)의 이름은 CalFresh 입니다.

**3. 섹션 8 주거지원 (Section 8 Housing Assistant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저소득층 가족과 노인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깨끗하고 안전한 개인소유의 집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섹션 8 저소득층 렌트 지원 (Section 8 Project-Based Assistance)**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개인소유 집들의 렌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 메디케이드 (Medicaid)**

(예외: 응급치료, 21 세미만 미성년, 임산부, IDEA 에 해당하는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이름은 Medi-Cal 입니다. Medi-Cal 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 (Public housing under section 9)**

\*저소득층 가족분들,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께 지원되는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 소유의 공영주택입니다.

**\*거주하시는 주마다 공적부조 프로그램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 혜택을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고 수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